



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청요강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소지원형)

※ 본 신청요강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025. 4.



연구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소지원형)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자격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 반드시 확인)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신청연구소 인문사회분야(융복합/예술체육학 포함) 연구소(연구기관)*만 가능 * 연구소 명칭 또는 연구자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 사회분야 연구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연구소여야 함 (국외형) 최근 3년 이내 국제공동학술행사(학술대회, 심포지움 포함) 개최 실적 1건 이상인 연구소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연구소 기반(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진 연구소로서 장기적인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육성지원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 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국내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기관 중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2020.1.1.~온라인 신청마감일 기준 연구업적 (공통) 연구책임자: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논문 게재 최소 1편 이상 또는 해외학술서 업적 최소 1편 이상 필수 ※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 필수 (국내형) 3편 이상 ※ 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 (국외형) 5편 이상 (해외연구자) 3편 이상(국제학술논문* 및 해외학술서) *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논문

- ② 사업신청을 위한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 및 IRIS 가입을 통한 NRI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탑재 방법은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참고)
- ④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접수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⑤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 시간 3~4시간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글로벌 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소지원형)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25년 5월 15일 (목) 14:00 ~ 5월 26일 (월) 18: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25년 5월 15일 (목) 14:00 ~ 5월 28일 (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신청 완료
제출 서류	① 연구계획서 ② 협약서/확인서/동의서 등 필수첨부 서류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필수항목 미입력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국외형) 해외일반공동연구원도 등을 필수

[주의사항] 한국연구자정보(KRI) 신규가입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가입 후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박급

▶ 이후 KRI에 가입해야 정상적으로 국가여권자보호가 블록 ※ 자세한 방법은 골고 게시글(본의 3-1) 참조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할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KRI에서는 해당 정보를 연계·반영함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좌측 메뉴) 협정체결기관현황



- 온라인 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누락 시 신청 불가

▶ 필수항목 - 입력방법은 [KRI 입력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기본정보	성별, 출생년도, 연구실전화, 핸드폰, EMAIL주소, 직급, 소속기관, 학과, 전공 등 ※ 연락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취득학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인 경우 : 박사,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석·박사 통합 학위의 경우 박사, 학사 정보 필수 - 석사인 경우 :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반드시 최종 취득학위 구분에 '최종' 체크 필수(인문사회/이공 구성 비율 요건 확인 시 시스템 반영 정보)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u>텍스트</u>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 학과명 입력 ▶ 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u>텍스트</u>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 란에 직접 입력)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소속기관의 관련부서 또는 \[KRI 입력매뉴얼\] 참조](#)

▶ (필수) 최종 취득학위 구분 설정 ※ [붙임 3-2] KRI 가입 및 입력 매뉴얼 p.28-29 참고

기본정보 ✓	연구분야	경력사항	취득학위	논문실적	연구비	저역서
지식재산	전시작품	학술활동	수상사항	자격사항	기술이전	
<div style="margin-top: 10px;"> ● 취득학위 [입력방법 다운로드] </div> <p>*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10px; margin-top: 1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취득학위구분 학위시작연월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학위취득연월 수여대학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수여국 단과대학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학과 전공연구분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세부전공명 지도교수명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최종학위구분 □ * 최종학위 일 경우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① 추가하기 저장하기 </div> <p style="font-size: small; color: gray;">최근정보갱신 아래연구자는 KRI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가상의 연구자입니다. 정보 이용에 적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div>						

▲ 최종 취득학위(박사 등)의 정보 입력 중 '전공연구분야' 입력 후 '최종학위 구분'에 **반드시 체크**

※ 인문사회/이공 구성 비율 요건 확인 시 접수 시스템에 반영되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연구과제 신청 전/후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신청 전 IRIS 가입을 통한 NRI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완료하였고, NRI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국가연구자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KRI 신규 가입자는 IRIS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기존 KRI 가입자는 연구 개시 전까지 IRIS가입 및 NRI 국가연구자전환 필수 ※ (국외형) 해외 일반공동연구원도 등록 필수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취득학위 등)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학위정보 입력 시 선행 학위정보(박사인 경우 박사, 석사, 학사정보 / 석사인 경우 석사, 학사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집단연구 과제 (인문사회연구소(대학/정책)중점, 토대연구 포함),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소지원형)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신청 불가함을 알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25년도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신청 가능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형 포함) 내에서는 1인이 1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 함을 알고 있다. (25년도 연구그룹형 신규과제 신청했을 경우(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구소지원형 신규과제 신청불가)	
신청연구소가 대학부설연구소일 경우, 신청연구소는 대학의 학칙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이어야 함을 알고 있다.	
신청연구소가 국내 연구기관일 경우,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단 KA에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 간 공동학술활동 관련 협력 의향서(LOI) 또는 MOU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함을 알고 있다(국내형 연합형과 국외형 해당).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LOI를 제출하고, 1차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MOU 제출	
연구진은 신청(협력)연구소에 소속된 자이여야 함을 알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 대학 소속 전임교원(기관일 경우 선임급 이상 연구원)이면서 연구소장 - 일반공동연구원 : 대학/연구기관 및 연구소 (임용)규정에 따른 임명 등으로 연구소에 소속된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재직 연구원(기관만 해당) - (국외형) 해외 일반공동연구원 : 협력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 교원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일반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을 확인하여 각각 기준을 충족 해야 함을 알고 있다. 또한 제재 완료된 논문, 출판 완료된 도서만 업적으로 인정됨을 알고 있다(논문제재예정증명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불가).	
연구비 사용계획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제가 선정되면 e-R&D시스템에 입력한 연구비로 과제가 개시됨*을 인지하였다.	
* 연구계획서와 e-R&D시스템에 입력된 연구비가 다를 경우, 시스템을 기준으로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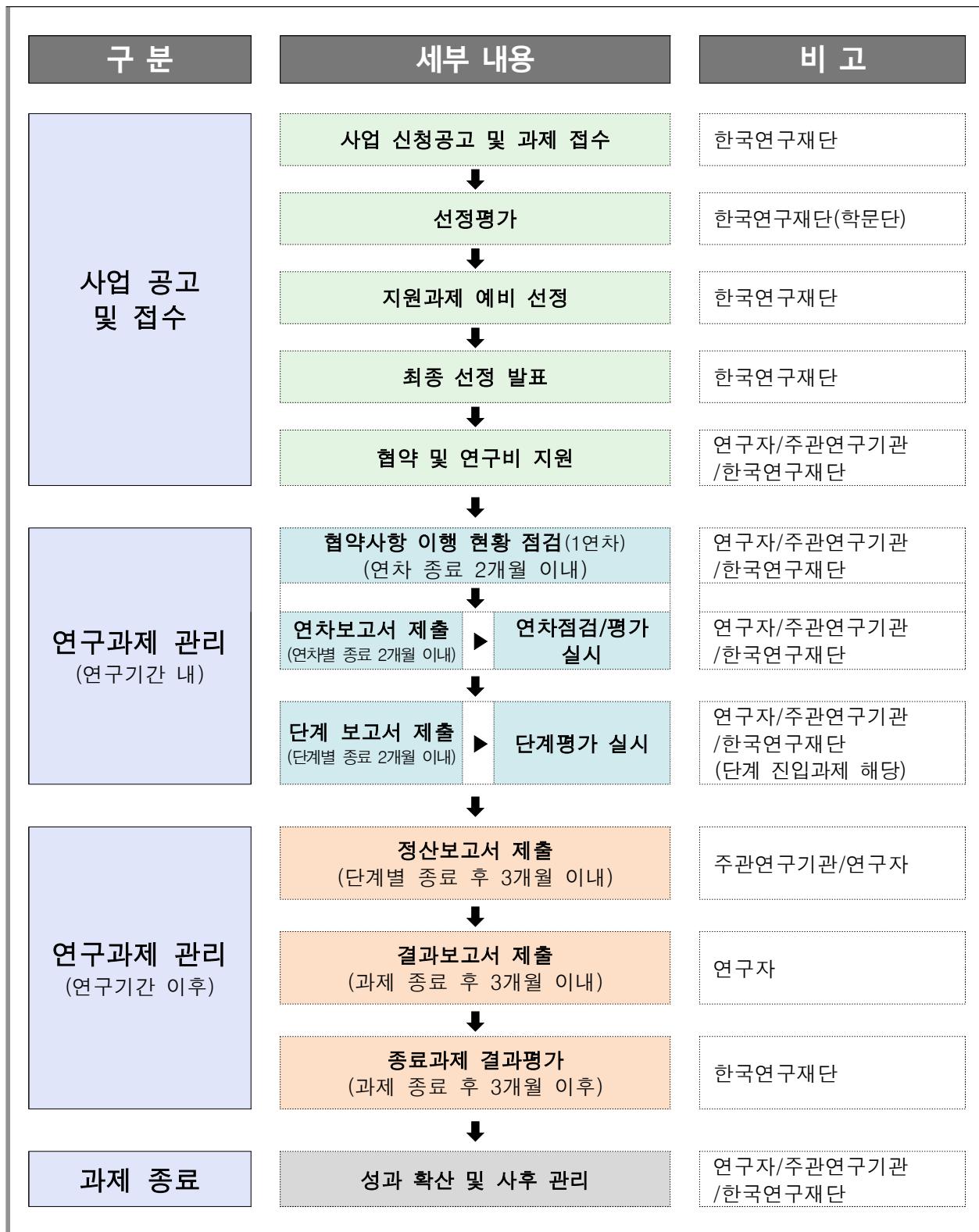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p>신청요강 내 “신청 및 수행제한”의 2책3공(학술연구지원사업 최대 3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2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내용 등을 숙지하였다.</p>	
<p>(국외형) 협력연구소(해외) 소속 연구자는 일반공동연구원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정보가 등록된 연구자로 연구업적이 최근 5년이내 3편 이상* 갖추어야 함을 알고 있다.</p> <p>* 국제 학술논문(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및 해외학술서만 인정</p>	
<p>기 선정과제 정보, 학문분야의 연구동향 등 확인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을 활용해야 함을 알고 있다.</p>	
<p>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이 신청접수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p>	
<p>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했으며, 관련 문의(본인의 연구과제가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포함)는 각 소속기관 IRB에 해야 함을 알고 있다.</p> <p>※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www.nibp.kr)의 공용 IRB에 확인</p>	
<p>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질의는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7744)으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p>	
<p>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요강 내 문의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연락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p>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p>연구계획서 작성 시 한글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까지만 허용함을 알고 있다. (단, 연구계획서 내 ‘연구요약’중 “한글로 작성”이 명시된 부분은 한글로 작성)</p>	
<p>1차년도 연구기간이 6개월(2025.9.1.~2026.2.28)이며 이에 따라 1차년도 연구비도 50%만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나머지 50%는 총 연구기간의 마지막 연차에 편성).</p>	
<p>연구소 전용공간(49.5m² 이상)은 필수사항이며, 기관의 재정지원은 선택사항임을 알고 있다. 또한 선정 후 협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협약사항 미이행시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p>	
<p>연구계획서는 글씨크기 12point로(권장사항), 40page(국외형은 60page) 이내로 작성(연구기반, 연구수행 포함)하되 연구책임자가 분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단, 분량 초과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붙임자료] 및 [첨부자료] 미포함).</p>	
<p>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단위를 ‘천원’ 단위로 작성하였다. (단위입력 예시) 10,000,000원(X) → 10,000천원(O)</p>	
<p>연구계획서 성과목표 기재 시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p>	
<p>접수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최종 접수완료 후 앞의 탭으로 돌아가 ‘클릭’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 (접수의 최종행위는 반드시 [신청완료]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함)</p>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p>신규과제 접수 후 접수내역을 출력하여 연구비 단위 등을 검토하였다.</p>	
<p>업로드 한 연구계획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 (작성내용 및 pdf변환 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평가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p>	

-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24	2025								
지원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예산 : 4,225백만원(8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 1,521백만원(4과제) - 계속 : 2,704백만원(4과제) <p>※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신규과제 1년차 예산은 50%를 산정 (50%는 추후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예산 : 6,253백만원(12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 1,521백만원(4과제) - 계속 : 4,732백만원(8과제) <p>※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신규과제 1년차 예산은 50%를 산정 (50%는 추후 편성)</p>								
세부유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내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내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연구소지원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내형 국외형</td> </tr> </tbody> </table> <p>※ (인사연) 미래공유형 → 국내형으로 개편</p>	내역	내내역	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연구소지원형)	국내형 국외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내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내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연구소지원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내형 국외형 신규 컨소시엄형</td> </tr> </tbody> </table> <p>※ ('26년) 연구그룹 지원형 및 연구소 지원형 연구개시일 일치 추진(9.1.)</p> <p>※ 컨소시엄형의 경우 별도 공고 예정</p>	내역	내내역	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연구소지원형)	국내형 국외형 신규 컨소시엄형
내역	내내역									
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연구소지원형)	국내형 국외형									
내역	내내역									
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연구소지원형)	국내형 국외형 신규 컨소시엄형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 해외 소재의 대학부설연구소(협력연구소) <p>※ 인문 사회 기반(예술·체육 학 포함) 이공분야 등 융합연구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형 : 52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 국외형 : 650백만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형 : 총 3년 ○ 국외형 : 총 6년(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평가절차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심사 → 전공평가(패널+발표) → 종합평가 ○ 계속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패널+발표) 실시 - 1단계 1차년도는 협약사항 점검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계속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패널+발표) 실시 - 1단계 1차년도는 협약사항 점검으로 대체 - 단계평가 등급 개선(3등급 → 5등급)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및 결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23년 선정과제)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 ('24년 이후 선정과제)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선정과제)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 ('26년 종료과제부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p>※ '26년 행정예고(결과평가 절차 및 등급 개선) 참고</p>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공고) 4월 → (접수) 5~6월 → (선정평가) 7~8월 → (연구개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과제수행 주요 절차 -



* 과제수행 주요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차 례 =

I. 사업목적 및 개요	1
II. 지원내용	5
1. 예산	5
2. 지원분야 및 내용	5
III. 신청 및 수행제한	7
1. 신청자격	7
2. 신청 및 수행 제한	13
3. 신청기간 및 방법	17
IV. 선정평가	21
1. 선정평가	21
2. 평가 절차 및 내용	21
3. 선정 및 협약체결	22
4. 협약사항 이행현황 점검	23
V. 연구과제 관리	24
VI. 사업비 관리	32
VII. 기타사항	35
[붙임1]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평가항목 및 지표	37
[붙임2] 영문 사업 설명서	41
[참고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44
[참고2] 한국연구재단 평가절차 및 평가 관련 제도	57
[참고3] 문의절차 및 문의처	59

I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인문·사회기반의 융복합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연구 네트워킹 확대 및 연구성과의 다양성·혁신성 제고
-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연구소와의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연구 선도 인문사회연구소 육성
 - (연구소지원형) 해외 연구소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인문사회연구소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역량 강화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중점추진방향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 내역사업 사업군 조정 및 사업 유형명 변경

- 기존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그룹형을 집단연구군으로 조정하여 연구자 및 연구현장 혼선 방지

당초(~2024년)		
사업군	사업명	내역
개인(공동) 연구군	글로벌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	연구그룹 지원형
집단연구군		연구소 지원형



변경(2025년~)		
사업군	사업명	내역
집단연구군	글로벌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	연구그룹 지원형
		연구소 지원형

※ ('26년) 연구그룹지원형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개편(6.1. → 9.1.개시)으로 글로벌 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개시일 일치 추진

- 국내형 연구소 구성(단독형/컨소시엄형) 중 컨소시엄형을 ‘연합형’으로 명칭 변경 추진

※ (당초) 국내형 컨소시엄형 → (변경) 국내형 연합형

효과적인 인문사회기반 글로벌 융복합 집단연구 수행 위한 자격요건 변경

- (공통)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중 전공분야를 인문사회로 명시
 - ※ 전공분야는 KRI 상 최종 취득 학위 전공명을 기준으로 재단 학술표준분류표에 따라 분류
- (국내형)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중 필수 업적 기준 강화
 - 연구책임자의 글로벌 학술활동 역량을 확보하여 국제적 학술·연구 및 성과 창출 촉진

구 분		(당초)~2024	(변경)2025~
국내형	연구 책임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좌동
		-	(연구책임자) 상기 3편 중 주저자로서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논문 게재 최소 1편 이상 또는 해외학술서 업적 최소 1편 이상 필요

(국내형) 글로벌 융복합 연구성과 창출 위한 성과관리 방안 개선

- (국내형) 연구성과 계획 및 관리에 글로벌 융합연구 특성 반영
 - 글로벌 R&D 연구성과물 유형에 따른 성과목표 자율적 수립을 통해 국제 학술·연구활동 활성화 기대
 - 우수한 글로벌 융복합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목표 관련 평가지표 보완

글로벌 R&D 연구성과물 유형

유형	방법
논문	국제 학술논문 게재(SCIE, SSCI, A&HCI, SCOPUS급) - 연구과제 참여인력(주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가 동시 참여한 국제학술논문
특허	국제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 파견 국내연구자, 신진연구인력 등
글로벌 인력양성	방문연구 학생의 학위배출 실적, 연관기업 취업자
해외 연구자 유치	국내 유치 해외 연구자 수, 해외 연구자 국내 유치기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정보교류(학술대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등) 개최 실적
저서	국제공동학술저서(챕터별 참여 포함)
포상	공동연구실적에 따른 국제학회 수상
추가 제시	기타(연구과제별 가능한 글로벌 성과물 유형 작성) - (예시) 글로벌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 등

※ 제시 유형 또는 연구과제별 가능한 성과 목표 자율 수립(유형 중 3개 이상 선택 必

4. 기대효과

- 인문사회 학술연구의 외연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성과 창출 및 글로벌 연구소 육성
- 해외연구소와의 협력 및 국제교류 활동 확대를 통해 글로벌 융합 연구 역량을 갖춘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5.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협약사항 이행현황 점검('24년 선정) ▪ 계속과제 연차점검 실시('23년 선정)
'2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연구개시('23, '24년 선정)
'2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세부시행계획 확정 · 시행 ▪ 신규과제 공고
'2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접수(연구자 및 주관기관)
'2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연구개시('22년 선정)
'2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연구개시(9.1)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2026년 행정예고(안)

□ 2026년 집단연구지원사업 종료 과제부터 결과평가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개선함.

○ (추진배경)

- 집단연구 장기지원 성과에 대한 결과평가 전면 시행으로 우수성과 발굴 강화
- 집단연구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자 별 학술활동 결과물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집단연구 공동연구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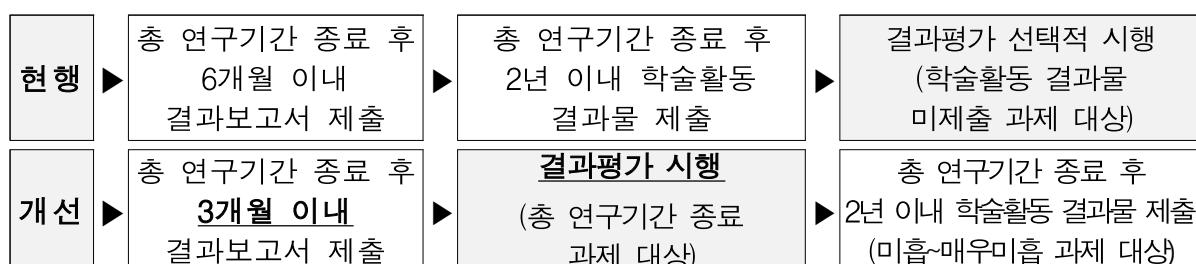
○ (대상사업) 인문사회연구소, 사회과학연구(SSK),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형)*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소지원형)은 결과평가 기 시행 중으로 결과평가 등급만 개선

○ (개선사항)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및 결과평가 방법

구분	주요 개선 내용	
	현행	개선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총 연구기간 종료 후 <u>3개월 이내</u>
결과 평가	대상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 과제
	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후
	등급	3등급 (양호, 보통, 불량)
	결과 활용	'불량' 등급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 결과평가 절차 >



< 결과평가 등급 >

현행		개선	
점수	등급	점수	등급
80점 이상	양호	95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미만 ~ 60점 이상	보통	95점 미만 ~ 85점 이상	우수
60점 미만	불량*	85점 미만 ~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

*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 미흡~매우미흡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의무 이행 및 결과물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II

지원내용

1. 예산

※ 간접비 포함 (단위 : 과제 / 백만원)

사업명	사업유형	신규과제		계속과제		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	연구소 지원형	국내	2	676	6	3,042	8
		국외	2	845	2	1,690	4
합계		4	1,521	8	4,732	12	6,253

※ 신규과제 1차년도 연구비는 회계연도 일치 기준에 따라 연구비의 50%(6개월분) 산정(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차단계 진입 시 마지막 연차로 편성)

※ 중단과제로 인한 잔여 예산은 유형별 선정율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예산으로 운영 등 유형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인문사회 기반(예술·체육학 포함) 이공분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의 융합연구*

* 주관연구소는 인문사회 분야여야 하며,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이공분야 연구자 참여 필수](#)

※ 편람, 사전편찬,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별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	연구소 지원형	국내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대학부설研/ 국내연구기관	3년	52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국외			6년 (3+3년)	65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 간접비는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대학(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며, 국내형은 최대 156백만원 이내, 국외형의 경우 최대 195백만원 이내로 함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2024년 지원실적

※ 간접비 포함 (단위 : 과제 / 백만원)

사업명	사업 유형	신규과제		계속과제		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	연구소 지원형	국내	2	669	4	2,678	6	3,347
		국외	2	809	-	-	2	809
계		4	1,478	4	2,678	8	4,156	

□ 연구개시일

- (신규) 9월 1일
- (계속) 3월 1일('23, '24년 선정 6개 연구소) / 6월 1일('22년 선정 2개 연구소)

III

신청

1. 신청자격

연구소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신청 과제 수 제한
국내형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제한없음
국외형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필수요건) 최근 3년 이내 국제공동학술행사(학술대회, 심포지움 포함) 개최 실적 1건 이상 (단, 국내 연구소가 주관/공동 주관기관으로 포함된 국제학술행사로,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가 발표자 또는 토론자가 참여한 실적을 인정)	대학(기관)별 2개 이내

* 신청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융복합/예술·체육학 포함)** 연구소(연구기관)*만 가능

* 연구소 명칭 또는 연구자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 연구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연구소이어야 함

« 대학부설연구소 요건 »

-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 규정이 있는 연구소
- 연구소 기반(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진 연구소로서 장기적인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육성·지원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 국내 연구기관 요건 »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기관 중 아래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연구자 자격요건

구분	자격 요건
국내형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이공분야 연구자의 경우, 최근 5년간 연구업적 5편 이상 (연구책임자 요건) 상기 3편 중 연구책임자는 주저자로서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논문 게재 최소 1편 이상 또는 해외학술서 업적 최소 1편 이상 필요
국외형	국내 연구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책임자 요건) 상기 5편 중 연구책임자는 주저자로서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 논문 게재 최소 1편 이상 또는 해외학술서 업적 최소 1편 이상 필요
	해외 연구자 해외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대학의 교원인 연구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이 3편 이상 국제학술논문 및 해외학술서 업적을 보유한 자 ※ 국제학술논문은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만 해당

- ※ **(연구책임자)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여야함(KRI 상 최종 취득 학위 전공명 기준으로 구분)**
-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업적 산정 요건 대상에서 제외
-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또는 국내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로 한정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대학 외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 산정 기간: 최근 5년 이내 (2020.1.1. ~ 온라인 신청 마감일)
-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공동저자 수 무관)
- 저서 : 단독저서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서 1건은 업적 2편
※ 해외학술서 : 해외출판사에 의해 발간된 저서(신청 시 증빙 제출)
※ 인정 기준
 - ISBN이 부여된 출판 도서
 -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 특허: 특허(등록 특허) 1건은 업적 1편

-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분야는 온라인 신청 시 소명서(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및 활동 등을 소명) 입력 가능

□ 연구소 인력 구성 기준

○ 공동연구원 구성 기준

- 총 연구인력(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중 이공분야(자연과학, 공학 등) 전공자 1/3(33%) 이상 1/2(50%) 미만 구성

* 연구자의 전공분야는 **KRI 최종 취득 학위 전공명**을 기준으로 재단 학술표준분류표에 따라 분류(과제 접수 시 KRI 필수정보 입력 및 '최종' 학위 설정 필수)

구분	국내형	국외형	기준
연구책임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장(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서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연구기관 : 연구소장이면서 선임급(연구원) 이상 재직자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불가피한 시유사망, 질병 등가 있을 시, 재단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공 동 연 구 원	일반공동 연구원	4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주관기관 대학 소속 전임교원 ※ 신청연구소 소속 필수(소속 확인 위한 위촉문서 등 증빙 필요) ▪ (연구기관)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 ※ 단, 타대학 및 타기관 소속 연구자 필요시, 참여는 2인 이내로 제한 → 타대학 및 타기관 소속 연구자도 신청연구소 소속 필수(소속 확인을 위한 위촉문서 등 증빙 필요)
	전임 연구인력	4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소속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전일제, Full-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연 4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포함 - 선정 후 3개월 이내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명 및 상근 ▪ 신진연구인력* 참여 필수(평가 및 점검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수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 이공분야 전임연구인력 참여 권장 ▪ 정년퇴직 교원은 전임연구인력 참여 불가
연구보조원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석사 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학사 석사급 연구원
행정지원인력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대학 재원(기관 간접비)으로 고용한 자
협력연구소(해외) ※ 국외형만 해당	-	2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해외 소재의 대학부설연구소 (인문사회·이공분야 모두 가능) ▪ (일반공동연구원) 협력 대학 소속 교원 (협력연구소 소속 필수)

* 1단계 1차년도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일반공동연구원(해외 포함) 및 전임연구인력 수 자율 구성(상기 최소 기준은 준수)

□ 지원기관의 역할

○ 연구소 공간 확보 등

구분	기준	비고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을 포함하여 산정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 	<u>필수</u>
기관의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을 위한 지원(현금) - 재원 마련 방안과 연구기간 중 구체적인 지원계획 	선택 사항

* 신청 시 공간 및 기관의 재정지원 확약서 관련 서류 제출

○ 연구소 육성계획 및 활동목표

- 신규 신청 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소 육성계획과 활동 목표(연구 및 인력육성)를 작성하여 제시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시, 연구소 육성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 이행시 지원중단 조치 가능
- *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 연구인력 채용 및 지원 등

○ 행정지원인력

- 연구소는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해야
 - 대학(기관) 재원(간접비 포함)으로 채용*한 직원이어야 하며, 조교·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은 불가
- * (근로 및 급여기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대학(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따름

〈국내형 연구소 구성〉

- 국내형 신규과제 신청 시, 단독형과 연합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성
 - **(단독형)** 1개의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원하되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이공분야 연구자 참여 필수
 - **(연합형)** 서로 다른 분야(인문사회/이공)의 2개 연구소 간 연합 구성
 - 동일 대학 내 연구소(인문/이공) 간 연계, 대학 간 연구소의 연계 가능
 - 사업 신청 시 주관연구소(인문사회분야)^{*}와 참여연구소(이공분야) 간의 역할분담, 예산배분, 인력구성 등을 명확히 제시
 - * 반드시 주관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로 지정
- ※ 사업 선정 후 주관/참여연구소 간 협정서(MOU) 체결 필수(1차년도 종료 1개월 전 제출)

〈국외형 연구소 구성〉

□ 주관연구소(국내연구소)

- **(신청자격)** 대학(기관)별 2개 이내 인문 사회 분야 연구소만 신청 가능
 - 연구소 기반(인력시설 등)을 갖추고 동 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 인프라 확장, 대학제적 연구, 학술 성과 향상, 박사급 우수연구인력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소
- **(중요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연구소와 공동학술활동 관련 협력 의향서(LOI) 또는 MOU를 제출할 수 있는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LOI를 제출하고, 1차년도 종료 1개월 전 시까지 MOU를 제출
 - * LOI/MOU에 협력연구소 소속 연구원 2명 이상의 공동연구 안정적 참여 가능, 국제공동학술활동 및 성과 달성을 신청요강에 명시한 내용 포함 필수
 - 협력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협력연구소(해외연구소)

- **(기본자격) 해외 소재 대학의 부설연구소**
 - 해외 소재 대학의 부설연구소 인문사회·이공분야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 대학 홈페이지의 조직도 및 규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 협력연구소의 연구자 참여요건은 **해당 대학 소속의 교원으로 함**
 - ※ 공동연구의 지속성을 위해 2명 중 1명은 최소 단계 연구기간까지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 사업수행 기간(총 6년, 3+3) 동안 **안정적으로 주관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시점 부터 구체적인 활동계획 제시**
 - ※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은 한국연구재단-주관연구기관 간 체결(한국연구재단-해외연구소 간 협약 없음)
- 주관연구소와의 협력을 위한 **주관연구소-협력연구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야 하며, 1차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중빙 제출(양 기관의 연구소장 또는 총장·부총장급간 MOU 사본 제출)**
- 주관연구소에 연구비 집행실적을 해외기관의 장(협력연구소장) 확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소지원형(국외형) 의무 성과 항목

구분	기준	비고
국제학술 논문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전체 최소 연 평균 3편 이상 논문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사항) 논문의 주저자는 반드시 연구소 참여 인력이어야 하며, 공동 저자를 포함해서 연구소 인력 2인 이상이 공동 집필해야 함 - 연 평균 3편 논문 중 2편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문사회 및 이공계 연구진 간 국제학술논문 1편 이상 ② 해외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간의 국제학술논문 1편 이상 ※ 국내 학술지는 KCI 등재지만 인정하며 2편당 국제학술지 1편으로 인정함(1편 실적에 한하여 적용) 	필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 학술대회 개최 연 평균 1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① 주관기관으로 국내 연구소와 해외연구소 이름이 모두 명기되어야 함 ② 공동발표 2건 이상[단, 건별로 인문사회, 이공계, 해외 연구진 각각 1인 이상 참여] 포함) 	필수
인력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구소와의 인력 교류 실적 연 평균 1건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연구인력 1인 이상 또는 국내연구자 1인 이상이 1개월 이내 각 연구소를 방문하여 공동학술활동 수행(공동연구, 세미나, 인턴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권장 	필수
자율융합 연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의 특성과 융합연구주제를 고려한 자율성과 연 평균 5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자율 설정하여 이에 따른 달성 실적 제출(연차점검·단계평가·결과평가에 반영) 	필수

※ 단계평가 시까지, 해당 의무 성과 조건을 미달성할 경우,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연구소 지원 중단

2. 신청 및 수행 제한

※ (중요)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협약 이후라도 선정취소 가능

□ 연구소 적용사항

- 집단연구군 및 동일사업* 내 1개 과제만 신청/수행 가능 (연구그룹형 선정 및 수행 시 신청 불가)
 -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그룹지원형, 연구소지원형
 - ※ 단, 집단연구군 내 인문한국 3.0(HK 3.0)지원사업(3월 개시) 신규과제 신청 후 미선정 시에 한하여 9월 개시 신청 가능(HK 3.0 주관/참여연구소 일괄 적용)
 - ※ 연구 수행기간 중 과제 수행 연구소 변경 불가
- 집단연구 과제*에 기 참여 중인 연구소는 신규 신청 불가하나,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과제 수행 연구소는 신청 가능
 - *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소지원형)
 -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

□ 연구자 적용사항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형 포함) 내에서는 1인이 1개 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 (연구그룹형 신청 · 선정 및 수행 시 신청 불가)
 - ※ 연구그룹형·연구소지원형 기수행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는 신청 및 수행 불가(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를 수행 중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25년도 연구그룹형 신규과제 신청·참여했을 경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25년도 연구소지원형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불가
 - ※ 연구소지원형(국내/국외) 내에서 신규과제 중복 신청 및 참여 불가(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
- (지원구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성과확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중견) · 공동연구지원사업(국내·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인문한국지원사업(HK+, HK 3.0) ·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우수연구집단육성, 글로벌아젠다)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연구소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저번역지원사업 · 저술출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수행 가능

- 3개 사업군에 대해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개 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 ※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 산정 시, 기 수행 중인 과제가 '2책 3공 과제수 미포함' 사업에 해당하여도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수행 가능
-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사업군 내 신청/수행 중복 가능
- ※ '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형)의 사업군 조정*에 따라 '24년도까지 선정된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형)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집단 연구군 내 연구책임자 중복 수행 허용. 단, '25년도부터 집단연구군 내 연구책임자 중복 신청 및 수행 불가(신규/계속과제 공통 적용)
 -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형) 사업군: (기존) 개인/공동연구군 → (변경) 집단연구군
 - ※ '25년에 한하여 집단연구군 상반기 연구개시 사업(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형), 인문한국지원(HK3.0))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연구개시 사업(인문사회연구소, 사회과학연구 글로벌이전다) 신청 가능(단,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형) 신청했을 경우, 선정 여부 상관없이 동 사업 연구소지원형 신청 불가)

- (공동연구원) 사업군과 상관없이 현재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까지 신청/수행 가능(동일 사업 중복 수행 불가)

- (2책 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별 연구개시일 변경으로 당해연도 신규과제와 종료과제의 동시 수행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시수행 허용)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2책 3공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 ① 우수학자지원 ②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③ 인문학대중화
-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
- ⑤ 학술단체지원 ⑥ 연구윤리활동지원 ⑦ 기초학문자료센터

- (신청제한)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청과제의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취소 등 조치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인건비의 중복수혜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인건비의 전부를 기 계상한 경우 본 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또는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되어 학교 소속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거나, 본 사업에 의하여 건강 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경우는 제외
 -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 예외 및 주의 사항 ≫

1.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과제 중복/표절 이의신청 관련 과제에 대해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최대 2년간 선정 제외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 (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3. '18~'20년 선정 과제의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 확정 시, 타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
- 4. 상기 사항 외 개별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서 별도의 신청 및 수행제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과제참여 연구자의 임신·육아 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중단 및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수행 유지
- 단,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 과제참여 상태 유지는 가능하나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불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구분	주요 내용
연구자 신청	▪ 2025. 5. 15. (목) 14:00 ~ 5. 26.(월) 18:00
기관 확인	▪ 2025. 5. 15. (목) 14:00 ~ 5. 28.(수) 18:00

*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이전에 재단 홈페이지 공지)

신청절차

구 분	신청 방법	비고
사전 준비 (연구자)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자격요건 등) ② IRIS (https://www.iris.go.kr)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전환 ※ KRI 미가입자는 KRI 가입 전 IRIS에 먼저 가입한 후, NRI 국가연구자 등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KRI 가입자는 추후 선정 확정 시 연구비를 받기 전에 반드시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해외일반공동연구원도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③ KRI (https://www.kri.go.kr) 실명 (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KRI 인증방법 : KRI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뉴 → 실명(재)인증 → 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국가연구자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④ 연구계획서 작성 ⑤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연구자 개별 준비
온라인 신청 (연구자)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http://ernd.nrf.re.kr) ② 연구계획서, 기관장 협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파일 탑재 ③ 온라인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 오프라인으로 제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기관 확인	(주관기관)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공통	연구계획서 ※ 유형별 연구계획서 서식에 따라 작성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책임자 포함 모든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서명 필수													
	지원 기관(대학) 역할에 대한 기관장 확약서 ※ 연구소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인력, 기관의 재정지원													
	연구소 대표실적 증빙자료집 ※ 국내형(연합형)의 경우, 참여연구소 대표실적(5건 이상) 포함하여 제출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증빙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구진 구분</th><th>소속기관</th><th>증빙자료</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구책임자</td><td>대학부설연구소</td><td>① 연구소장 ② 주관대학 소속 전임교원</td></tr> <tr> <td>국내 연구기관</td><td>① 연구소장 ② 선임(연구원)급 이상 재직자</td></tr> <tr> <td rowspan="5">일반공동 연구원</td><td>대학부설연구소</td><td>①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원 ② 대학 소속 전임교원</td></tr> <tr> <td>국내 연구기관</td><td>①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원 ②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td></tr> </tbody> </table>	연구진 구분	소속기관	증빙자료	연구책임자	대학부설연구소	① 연구소장 ② 주관대학 소속 전임교원	국내 연구기관	① 연구소장 ② 선임(연구원)급 이상 재직자	일반공동 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①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원 ② 대학 소속 전임교원	국내 연구기관	①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원 ②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연구진 구분	소속기관	증빙자료												
연구책임자	대학부설연구소	① 연구소장 ② 주관대학 소속 전임교원												
	국내 연구기관	① 연구소장 ② 선임(연구원)급 이상 재직자												
일반공동 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①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원 ② 대학 소속 전임교원												
	국내 연구기관	①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원 ②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상세주소) 등)는 블라인드 처리 필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신청연구소가 국내 연구기관일 경우) 신청요건 확인서	해당 시												
국내형 (연합형)	주관연구소와 참여연구소 간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증빙 ※ 과제 선정 시 MOU 체결 지연되는 경우, LOI(협력의향서)를 3개월 이내 제출 필수	※ 선정 시, 1연차 종료 전까지 제출												
국외형	최근 3년 이내 국제공동학술행사(학술대회, 심포지움 포함) 개최 실적 증빙 ※ 연구소 자격 요건 참고(p.7) ※ 국제공동학술행사 개최 포스터 및 팸플릿 등 개최일자, 개최기관, 발표자 등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제출	필수												
	일반공동연구원(해외) 자격 증빙 ① 대학 소속 교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협력(해외)연구소 소속 연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식적 효력을 가진 서류(공문, 임명장, Letter(Dean 등 관계자 서명) 등)	필수 ※ 불가피한 경우, 선정 후 제출 가능												
	해외연구소의 최근 5년간 대표적인 논문 및 저서 실적(3편 이내)	필수												
	국내연구소와 해외연구소 간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증빙 ※ 과제 선정 시 LOI(협력의향서)를 3개월 이내 제출 필수	필수 ※ 선정 시, 1연차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												
	해외연구소의 기타 연구 및 글로벌 학술활동 운영 실적 증빙 ※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국제인력교류 운영 등)	선택												

※ 양식·기타 제출 필요 자료 및 세부 사항은 유형별 연구계획서 참조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국외형) 해외일반공동연구원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구분	KRI 신규 가입자 (‘21.8이후 KRI에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불가)	KRI 기존 가입자
차이	<p>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하여 실명인증 시, NRI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자 번호와 동일한 국가연구자번호를 KRI에서도 부여함 	<p>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 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I에 등록된 국가연구자번호와 NRI의 국가연구자번호는 일치하여야 함. 해당 절차는 신규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 지급 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p>※ 문의: IRIS 고객센터 (☎ 1877-2041)</p>
공통	<p>2)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학위정보(최종 학위를 포함한 소지 학위 전체)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공개’로 설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과제접수 후 신청내용 및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해 연락할 수 있으며 이메일, 연락처 등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p>3) 온라인 신청 시에는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또는 「MS워드」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p> <p>4) 신청자는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을 정하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과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5)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으로 과제 신청 시 선택하는 심사요청 분야와 연구계획서에 기재한 연구분야명은 동일해야 함</p> <p>※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p> <p>※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학문단으로 문의 (연락처는 ‘문의처’ 참고)</p> <p>6) 기 선정과제 정보 및 해당분야 연구동향 확인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홈페이지를 활용</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 관련자료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p>	

□ 온라인 신청

-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 확인 가능)
-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가 KRI에 입력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은 신청요건 확인에 활용하고 평가 시 업적평가에 반영됨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 함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서식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하고, 스캔하여 탑재하여야 함
-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1)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 추후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해외 일반공동연구원 재직 확인 서류^{*} 제출
 - *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허위 등록 또는 재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2)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 · 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조치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1. 평가단계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 연구소 육성·운영계획, 연구진 수행의지,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계획 등	
		발표평가		
3단계	종합평가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선정예상 과제 수의 3배수 내외)에만 활용

2. 평가절차 및 내용

□ 1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재단 e-R&D 시스템을 활용한 확인 심사

※ 전산 및 기관 확인 외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공평가 시 검토

- (심사내용)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 2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패널평가 + 발표평가

- (평가내용) 연구소 운영실적, 연구인력, 연구소 발전계획,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연구과제 수행계획 등

※ [붙임1]의 1. 신규 선정평가 참조

□ 3단계 : 종합평가

- (평가내용) 평가결과 종합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3. 선정 및 협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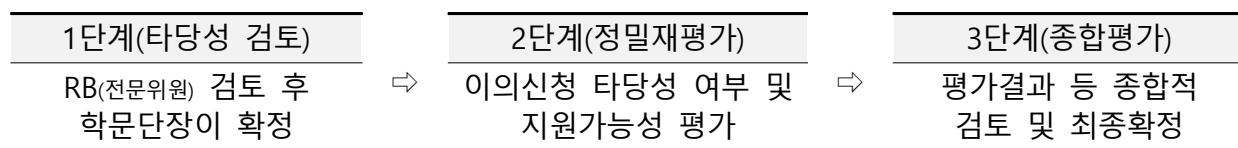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표절 및 중복 지원 등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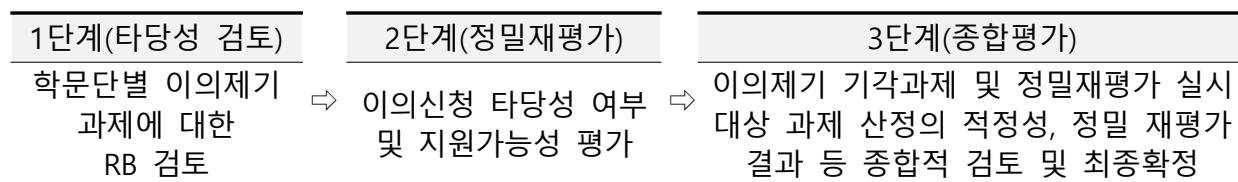
※ 예비선정 단계에서 제기된 표절 및 중복지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제도 운영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 방지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 중복/표절 과제 처리절차



■ 이의제기 과제 처리절차



※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가능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3자 간 협약체결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 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연구과제 협약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연구과제 협약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 협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4. 협약사항 이행현황 점검

- 신규 선정 연구소를 대상으로 신청요강 및 연구계획서(획약서)상의 연구인력, 연구소 근무 환경, LOI/MOU 체결여부(연합형/국외형)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 점검
 - (점검시기)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 (점검방법) 연구소 자체점검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이행 점검
 - 증빙자료 사전 검토 후 필요시 일부 연구소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가능
 -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 가능
 - (점검항목) 연구인력 구성, 연구소 전용공간, LOI/MOU 체결여부(연합형/국외형) 등
- ※ 세부 점검내용은 추후 확정 후 선정 대학(기관)에 공지 예정

V

연구과제 관리

과제관리 절차

구분	① 연차점검 관련 연차보고서 제출	② (국외형)단계평가 관련 단계보고서 제출	③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대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계획 대비 실적 및 차단계 계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온라인 입력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분	④ 결과보고서 제출	⑤ 결과물 제출	⑥ 결과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별 연구 결과물(논문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형)단계평가 시까지 의무성과 미충족의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 과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 제출 (eR&D 온라인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

1.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점검

○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e-R&D시스템)
- (제출자료) 연차보고서(소정 서식 온라인 탑재)

○ 연차점검 실시

- (점검시기)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 연차 연구 개시 이전

* 회계연도 일치 관련 1단계 1차년도는 협약사항 이행현황 점검으로 대체

- (점검대상) '23년 선정, '24년 선정 6개 연구소

* '23년 선정과제는 '24년 12월 말 보고서 접수 후 '25년 1~2월 연차점검 완료

* '24년 선정과제는 '25년 12월 말 보고서 접수 후 '26년 초 연차점검 실시

- (점검방법)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	▪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도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전공평가(패널)를 실시하는 경우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과제 및 연구비 지원 중단

- (점검항목) 당해연차 실적 및 다음연차 계획, 연구성과 기여도 및 현장
적합성 등 * [붙임1]의 「연차점검」 참조

- (점검결과 활용) 다음 연차 계속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단계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1단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e-R&D시스템)
- (제출자료) 단계보고서(소정 서식 온라인 탑재)

○ 단계평가 실시

- (평가시기) 단계보고서 접수 후 다음 단계 연구 개시 이전
※ 단계평가 대상 사업: 연구소지원형 국외형

- (평가방법)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서 평가 ※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단계 실적 평가, 단계 계획 평가 등 ※ [붙임1]의 「단계평가」 참조
-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95점 이상	매우우수	계속지원
95점 미만 ~ 85점 이상	우수	
85점 미만 ~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	지원중단

- (평가결과 활용) 다음 단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22년도 선정 국내형 과제는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e-R&D시스템)
- (제출자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파일 탑재
 -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
 - 학술활동 요약문 : 시스템 직접 입력
 - ※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시스템 직접 입력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www.krm.or.kr)를 통해 PDF파일 형태로 공개 가능

< 주의사항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 결과평가 실시

※ 해당사항은 2025년 결과평가에만 해당되며, 2026년 이후부터는 행정예고 사항을 반영하여 결과평가 추진 예정 /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

- (평가시기) 결과보고서 접수 후 3개월 이후
 - ※ '22년도 선정 국내형 과제는 종료 후 6개월 이후
- (평가방법)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최종보고서 평가 ※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등급 최종 확정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에 대한 목표달성,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등 ※ [붙임1]의 「결과평가」 참조
- (평가결과 활용) 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 불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2.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학술활동 기본 의무사항

□ (공통) 융합연구성과 결과물

-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소별 자율 설계하고, 성과물 제출 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새로운 유형의 성과물 제시 가능

※ 선정평가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및 연구내용과의 부합성,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검토

≪ 예 시 ≫

- 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인문사회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발굴 및 사업화 실적(시스템, 플랫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
- ② 융합연구를 통한 인문사회 연구성과의 미래지향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③ 일반국민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성과확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강좌/체험/전시 등)
- ④ 박람회·컨퍼런스·전시 활동, 융합연구 연계전공 신설 등
- ⑤ 연구주제 관련 논문, 저서(연구 결과물)

□ (국내형) 글로벌 R&D 연구성과

- 연구과제별 가능한 글로벌 R&D 연구성과물 유형 중 연구계획 수립 및 성과 달성을 통해 자율적 글로벌 연구활동 촉진
- 제시 유형 또는 연구과제별 가능한 성과 목표 자율 수립(유형 중 총 3개 이상 선택 必)

글로벌 R&D 연구성과물 유형

유형	방법
논문	국제학술논문 게재(SCIE, SSCI, A&HCI, SCOPUS급) - 연구자(주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가 동시 참여한 국제학술논문
특허	국제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 파견 국내연구자, 신진연구인력 등
글로벌 인력양성	방문연구 학생의 학위배출 실적, 연관기업 취업자
해외 연구자 유치	국내 유치 해외 연구자 수, 해외 연구자 국내 유치기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정보교류(학술대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등) 개최 실적
저서	국제공동학술저서(챕터별 참여 포함)
포상	공동연구실적에 따른 국제학회 수상
추가 제시	기타(연구과제별 가능한 글로벌 성과물 유형 작성) - (예시) 글로벌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 등

※ 연차보고서 및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의무사항 수행내역을 작성

(국외형) 의무 성과 항목

구분	기준	비고
국제학술 논문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전체 최소 연 평균 3편 이상 논문 게재 - (필수사항) 논문의 주저자는 반드시 연구소 참여 인력이어야 하며, 공동 저자를 포함해서 연구소 인력 2인 이상이 공동 집필해야 함 - 연 평균 3편 논문 중 2편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문사회 및 이공계 연구진 간 국제학술논문 1편 이상 ② 해외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간의 국제학술논문 1편 이상 <p>※ 국내 학술지는 KCI 등재지만 인정하며 2편당 국제학술지 1편으로 인정함(1편 실적에 한하여 적용)</p>	필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 학술대회 개최 연 평균 1건 이상 - (단, ① 주관기관으로 국내 연구소와 해외연구소 이름이 모두 명기되어야 함 ② 공동발표 2건 이상[단, 건별로 인문사회, 이공계, 해외 연구진 각각 1인 이상 참여] 포함) 	필수
인력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구소와의 인력 교류 실적 연 평균 1건 이상 - 해외 연구인력 1인 이상 또는 국내연구자 1인 이상이 1개월 이내 각 연구소를 방문하여 공동학술활동 수행(공동연구, 세미나, 인턴쉽 등) <p>※ 국내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권장</p>	필수
자율융합 연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의 특성과 융합연구주제를 고려한 자율성과 연 평균 5건 이내 - 연간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자율 설정하여 이에 따른 달성 실적 제출(연차점검·단계평가·결과평가에 반영) 	필수

※ 단계평가 시까지, 해당 의무 성과 조건을 미달성할 경우,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연구소 지원 중단

3.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수시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으로 수시 제출(e-R&D 시스템)
- (제출기준)
 - (국내형)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소별 자율성과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성과 환류, 글로벌 R&D 연구성과 실적 및 증빙
 - (국외형) 연구소별 의무 성과 항목에 대한 실적 및 증빙
 - (공통) 연구개시(신규참여) 후 6개월 이내에 게재/출판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결과물에 대한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국문	▪ 이 논문(저서)은 000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하여 병기 허용

※ 교육부 또는 재단 관련 사사표기가 이중으로 들어간 경우 인정 불가

4. 학술활동 성과 관리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e-R&D 시스템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

-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학술활동 결과 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국외형) 해외기관과의 학술활동 성과물의 소유 원칙

- (국내 연구기관 소유 원칙)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외국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subcontract)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내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요

VI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는 연구과제 협약체결 이후 재단에서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하여 중앙관리
 - 다년과제는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계속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비 지급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관계 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 변동 가능

□ 간접비 지급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대학(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적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을 기준으로 간접비 계상
- 저서/역서 출판비는 간접비 또는 대응자금(협약금액 제외)으로 확보
-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따라 간접비 계상*
 - *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5%) 및 비영리기관(17%)
- 해외기관 관련 간접비 집행 기준
 - 해외기관 간접비 책정은 ‘국내 기관의 간접비 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외기관 간접비 제공’ 을 하도록 함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이지바로)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연구비 정산은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실시하나 이와 별개로 연구비 사용내역은 수시 보고)
- ※ 사용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연구비 정산

- (정산시기)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 (정산방법) 연구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에 따른 집행 적합 여부를 검토
※ 필요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 가능
 - * 주관기관 협약 체결 시, 연구계획서에 주관연구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사용에 관한 주관연구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 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 주관연구기관 및 해외기관 간 계약 내용에 대한 번역 공증 반드시 포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비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좌이체 이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사업비 집행실적을 제출 받아 연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내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관련 증빙자료

구분	증명자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① 해외기관과의 계약서 ②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 회계연도 일치 적용

- 2025년 신규과제 1차년도 연구비는 회계연도 일치 기준에 따라 연구비의 50%(6개월분, 2025.9.1.~2026.2.28.)를 편성·지급
 - 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연구종료 마지막 연차로 편성·지급*
 - * 단, 단계가 있는 과제인 경우 2단계 계속지원이 확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급

< (국내형) 2025년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차별 연구기간 >

3년 과제(36개월)	
1차년도	2025.9.1.~2026.2.28. (6개월)
2차년도	2026.3.1.~2027.2.28. (12개월)
3차년도	2027.3.1.~2028.2.29. (12개월)
4차년도	2028.3.1.~2028.8.31. (6개월)

< (국외형) 2025년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차별 연구기간 >

6년 과제(72개월)		
1단계	1차년도	2025.9.1.~2026.2.28. (6개월)
	2차년도	2026.3.1.~2027.2.28. (12개월)
	3차년도	2027.3.1.~2028.2.29. (12개월)
2단계	4차년도	2028.3.1.~2029.2.28. (12개월)
	5차년도	2029.3.1.~2030.2.28. (12개월)
	6차년도	2030.3.1.~2031.2.28. (12개월)
	7차년도	2031.3.1.~2031.8.31. (6개월)

기타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 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 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 · 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함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 확인
 - ※ 문의처 : 각 대학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문의 www.nibp.kr)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연구윤리 교육’ 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 ※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 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 필요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알림공간 ▶ 공지사항) 참조
- 본 사업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으로 갈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붙임 1**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평가(국내형)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국내
연구소 평가	▪ (참여)연구소 운영실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과거 과제 수행 업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전문성 ▪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현황 	5
	▪ 융복합 연구구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융합연구 수행 역량 ▪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연구를 위한 참여 연구인력 구성분포의 적정성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 공동연구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참여)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과제 참여기간 내의 발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전문화 · 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연구주제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 · 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 · 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5
	▪ 지원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대학 또는 자체 등)의 (참여)연구소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5
연구내용 평가	▪ 융복합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연구로서의 필요성 ▪ 제안된 연구주제의 융합성 정도 ▪ 참여 연구 주체(학문분야, 참여연구소 등)별 연계 방법의 구체성 	15
	▪ 연구과제 수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필요성의 타당성 및 연구 목표의 구체성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15
	▪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연구성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연구 세부내용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 기존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사회 분야 주도의 융합연구 방향 모색 여부 ▪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 및 실현 가능성 	20
	▪ 융복합연구 인력 양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 학문후속세대(학생연구자 포함) 육성 및 활용계획 	10
	▪ 연구성과의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분야 지식증진,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학문적, 사회 · 경제적 기여도 등 연구성과 파급효과 ▪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학 · 연 · 산 포함) 	15
계			100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 선정평가(국외형)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국외
연구소 평가	▪ 주관연구소 운영실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과거 과제 수행 업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전문성 ▪ 연구소 인력, 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현황 	5
	▪ 융복합 연구구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글로벌 융합연구 수행 역량 ▪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국내/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융복합연구를 위한 참여 연구인력 구성분포의 적정성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 공동연구 추진체계의 적정성 	5
	▪ 주관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과제 참여기간 내의 발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전문화 · 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연구주제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 · 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 · 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활용계획 	25
	▪ 지원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대학 또는 지자체 등)의 주관연구소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5
	▪ 해외연구기관 연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구기관(공동연구원 등)이 보유한 연구 역량의 우수성 ▪ 참여 해외연구기관과의 기존 협력 내용의 우수성 ▪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연구기관 보유자원에 대한 활용 가능성 	5
연구내용 평가	▪ 글로벌 융복합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융복합연구로서의 필요성 ▪ 제안된 연구주제의 융합성 정도 ▪ 참여 연구 주체(학문분야, 참여연구소 등)별 연계 방법의 구체성 	15
	▪ 연구과제 수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필요성의 타당성 및 연구 목표의 구체성 ▪ 해외 연구기관과의 역할분담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15
	▪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연구성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연구 세부내용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 기존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 사회 분야 주도의 융합연구 방향 모색 여부 ▪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 및 실현 가능성 	15
	▪ 융복합연구 인력 양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 학문후속세대(학생연구자 포함) 육성 및 활용계획 	10
	▪ 연구성과의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분야 지식증진,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학문적, 사회 · 경제적 기여도 등 연구성과 파급효과 ▪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학 · 연 · 산 포함) 	10
	▪ 국제협력 필요성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공동연구의 필요성 ▪ 해외 공동연구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및 시너지 효과 	10
계			100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연차점검(국내형)

점검항목	점검 주안점
당해연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수행 계획(인력양성 포함) ▪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가능성
연구성과 기여도 및 현장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목표 대비 달성을 실적 ▪ 연구과제 관련 소통 · 환류 실적

연차점검(국외형)

점검항목	점검 주안점
당해연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수행 계획(인력양성 포함) ▪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가능성
국제 공동연구의 질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공동연구 수행 정도 및 협력성과(공동 연구논문, 인력교류 등)의 질적 우수성 ▪ 해외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수행 정도

단계평가(국외형)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단계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 달성을 수준 ▪ 융복합연구 인력 양성 실적 ▪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 대학(기관)의 지원실적의 우수성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 국제공동(협력)연구 수준
단계 계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수행계획 ▪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연구소 운영계획 ▪ 국제공동(협력)연구 추진계획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결과평가(국내형·국외형)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의 질적 우수성▪ 결과 도출의 타당성 확보 정도
▪ 연구성과의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 인력 양성 정도▪ 연구성과의 학술적/사회적 기여▪ 연구소의 특성화/전문성 확보 정도
▪ 연구성과에 대한 목표달성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달성 노력▪ 목표수준의 도달 정도
▪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 인력 운영의 적정성▪ 연구소 예산 사용의 적정성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영문 사업 설명서

Global Convergence Research Program-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Grants

Title of the Project : Global Convergence Research Program-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Grants

Funding Agenc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Project Duration: 2025.9.1 ~ 2031.8.31. (6 years)

* Three years into the project, the NRF will conduct a thorough evaluation of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ensuing results will dictate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the subsequent three years.

Annual Project Funding: 845million KRW (about US\$ 636,000)

Project Background

The rapid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significantly heightened the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daily life, extending beyond the industrial realm.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s swiftly advancing its support for 'S&T-based convergence research,' developing technologies and strategies that address societal issues from a science and technology (S&T) perspective. While this approach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innovative convergence knowledge and technologies, its effectiveness is constrained by a lack of diverse perspectives.

Recognizing this limitation,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back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championing the Global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Research (GHSCR) Project. This initiative aims to facilitate convergence research grounded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roviding a platform for Korean researchers to collaboratively explore solutions to emerging social challenges alongside their counterparts in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Furthermore, the project supports Korean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engaging in collaborative research endeavors with scholars from foreign universities, fostering an international dimension to the pursuit of innovative solutions.

Project Objectives

The project's primary goal is to provide support to research cent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Korean universities,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counterpart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convergence research.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Through these partnerships, the project aims to elevate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Korean centers, while concurrently nurturing a pool of human resources equipped with advanced global research capabilities.

Key Project Activities

The core activities of the project encompass:

1.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s:

- Forge partnerships between research cent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counterparts abroad.

2. Conducting Convergence Research:

- Support joint research initiativ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research centers, emphasizing convergenc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 Capacity Building for Korean Research Centers:

- Provid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Korean centers.

4. Human Resource Development:

- Promote the cultivation of researchers with a global perspective and interdisciplinary competencies.

5. Dissemination of Research Outcomes:

- Share the findings and insights generated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on a global scale.

6.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Networking:

- Facilitat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vents to strengthen global connections and promot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by foreign university research centers

- Foreig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interested in collaborating with Korea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on the project must sign a Letter of Intent (LOI) with the Korean university within three months of the project's commencement.
- "Develop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directors of the research centers at a Korean university and the research center of a foreign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university. Alternatively, consider creating an MOU involving the presidents or vice presidents of the respective universities."

- The foreign university research center is required to formaliz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Korean university research center, signifying their commitment to collaborative academic initiatives. These joint activities encompass: 1) Coordinated research endeavors and collaborative paper publication; 2)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joint academic events; and 3) Facilitation of personnel exchange, including researchers, graduate students, etc."
- Enable a minimum of two researchers from the center to partake in research activities at a Korean university research center. The researchers must satisfy the following criteria: 1) They must hold a full-time faculty position (assistant, associate, or full professor) at a foreign university and be affiliated with a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2) One of them is required to maintain affiliation with the university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from the project's commencement (starting September 1, 2025); and 3) They must demonstrate a recent record of publications in internationally recognized journals at least 3 article(SCIE, SSCI, A&HCI, SCOPUS level, etc.) or a foreign-published academic book within the past 5 yea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oreign University Center and Their Researchers

1. The foreign center is expected to act as a co-organizer in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arranged by the Korean university center throughout the project duration
2. Facilitate reciprocal visits by researchers from the Korean institute to the foreign institute, promoting collaborative research activities
3. Encourage foreign researchers to engage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and collaborate on joint publications
4. Facilitate the visitation of foreign researchers to Korea, encouraging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academic conferences organized by the Korean university center
5.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expenses related to joint academic activiti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researchers as part of the project

Project Schedule Overview

O Application submission deadlines : May 26, 2025

O Selection Evaluation Results Announcement Schedule : September 1, 2025

참고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p>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p> <p>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자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p> <p>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p> <p>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p> <p>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p> <p>나. 주류 등 유통성 비용</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p> <p>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p> <p>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p> <p>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p> <p>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p> <p>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 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p> <p>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p> <p>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p> <p>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p> <p>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p> <p>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p> <p>다) 비영리기관 내 종양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p>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p> <p>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p> <p>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p> <p>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p> <p>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p> <p>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p> <p>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p> <p>나. 연구수당</p> <p>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p> <p>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p> <p>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p> <p>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left: 20px;"> <p style="margin: 0;">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p> </div> <p>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left: 20px;"> <p style="margin: 0;">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p> <p style="margin: 0;">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p> </div>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p>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p> <p>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p> </div> <p>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p> <p>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p> <p>가. 직접비 사용 잔액</p> <p>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p> <p>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p> </div>	
직접비	인건비	-	<p>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p> <p>가. 참여연구자</p> <p>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p> <p>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p>	<p>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p>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학생 인건비	-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장비 임차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p>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p> <p>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p>	<p>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p> <p>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p> <p>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p> <p>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 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p> <p>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p> <p>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p>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비를 사용하여야 한다.</p> <p>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p> <p>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p> <p>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p>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외부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기술 활용비	<p>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p> <p>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p>	<p>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p> <p>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회의비	<p>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p>	<p>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기기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p>
		출장비	<p>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p>	<p>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예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p>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p> <p>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p>
		소프트 웨어 활용비	<p>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p>	<p>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p>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p> <p>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p> <p>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p> <p>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p>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p>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p>	<p>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 할 수 있다.</p> <p>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p> <p>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p> <p>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p>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 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연 구 수 당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 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 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탁 연 구 개 발 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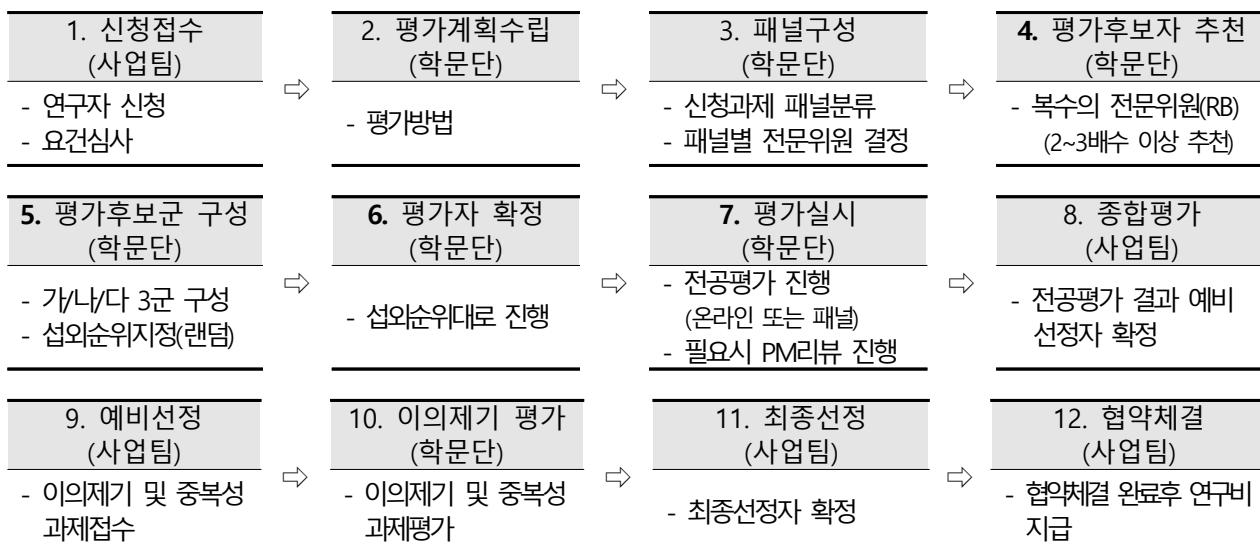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 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p>에는 제외한다)</p> <p>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기관 공통 비용		<p>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사업단 운영비		<p>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p>	<p>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p>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p> <p>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p> <p>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p>	<p>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p>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p> <p>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p>
연구 지원비	연구실 안전 관리비		<p>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p>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p>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 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p>	<p>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p>
	연구 보안 관리비		<p>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p> <p>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p> <p>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p>	<p>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p>

2025년도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소지원형) 신청요강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성과 활용 지원비	연구 윤리 활동비		론 기술자료 임차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 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진흥 활동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2**한국연구재단 평가절차 및 평가관련 제도****□ 평가절차**

※ 4~7번(평가후보자 추천-평가실시) 절차까지는 eR&D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 세부내용은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평가위원 풀 구축

- 목적 : 적정한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
- 평가위원 풀 구축 기준

(1단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가능 인력 도출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 학술개발/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단계) 1단계 평가가능 인력 중,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풀 구축

- 연구성과(논문제작**, 국내외 특허등록, 공동 저역서) 2건 이상 보유한 사람

**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 최근 5년간 단독 저역서 1건 이상 연구성과 보유한 사람

- 평가위원 풀 구축 현황('24년도 현황) ※'25년 풀 구축 시 변동될 수 있음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15,013명	25,535명	5,751명	1,120명

□ 평가관련 제도

○ 배제심사자 제도

- 개요 : 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2인을 지정하는 제도
- 해당사업 :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공동연구(일반공동연구유형), 인문도시

○ 상관관계 제도

- 개요 : 신청자 및 평가자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
- 예시 : 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제지간인 평가자를 연구과제 평가에서 제외

○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 연구과제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 운영 도모
- 구성 : 감사인, 준감사인(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 점검항목 : 평가 진행의 적절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 기타(평가윤리 등)
- 점검방법 : 현장 참관, 온라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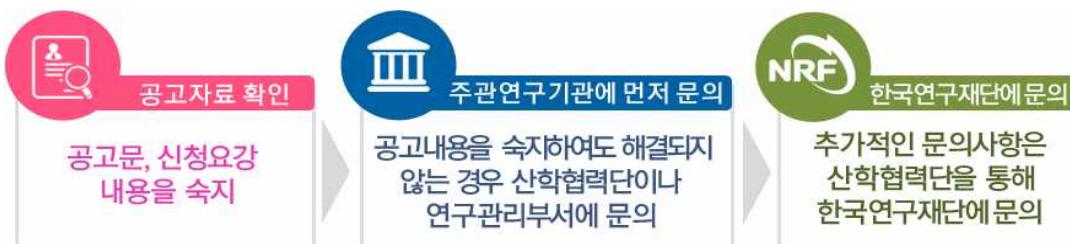
참고3**문의절차 및 문의처****□ 문의절차**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시스템 관련 문의**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정보시스템지원팀	042-869-7744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데이터분석팀	042-869-6674 042-869-6676

□ 사업 관련 문의(사업내용, 지원조건 등)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업신청 관련 문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042-869-6134 042-869-6137 042-869-6133

□ 평가 관련 문의(선정평가(발표평가 등) 절차, 방법 등)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과제평가 관련 문의	문화융복합단	042-869-6632